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155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정하은(기소), 조경동(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청
담당변호사 곽준호, 김한재, 김지혜, 진동윤, 박주현, 최서빈, 김영
규, 박정인, 김보경, 이희주, 정희수, 김강산
판 결 선 고 2026.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3,819,425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에서 제공하는 온라인게임 'C'의 이용자('유저')로서, 2022. 5.경 정식 게임서버에 비하여 손쉽게 경험치나 아이템 등을 얻을



수 있는 '사설서버'를 이용하려 하였으나 마땅한 사설서버를 찾지 못하자, 직접 사설서버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법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C 'D서버' 제공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1.경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피해회사로부터 게임물 제공 또는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게임 'C'의 사설서버인 'D서버'를 개설한 뒤 위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파일을 세팅하여 배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서버의 트래픽을 관리하고, 메신저 '디스코드'에 'G'라는 이름의 채널을 개설하여 공지사항을 전파하는 등 위 서버를 관리하고, 위 서버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후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고 위 서버에 가입된 해당 후원자의 계정에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는 등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피해회사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저작권을 복제·전시하여 침해하였다.

2.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C 'D서버' 제공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간 동안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회사의 게임물인 온라인게임 'C'의 사설서버인 'D서버'를 운영하면서, 온라인게임 'I'의 사설서버인 'J서버'를 운영



하는 성명불상자(일명 'K')를 상대로 사설서버 운영방법에 대한 조언을 수회 구하던 중 2022. 11. 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내 밑으로 들어오면 호스팅, 클라우드 서버, 가상 계좌 등은 알아서 관리하여 줄 테니 너는 사설서버 운영, 관리, 장애처리 등의 업무만 담당하고 수익금을 배분받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호스팅 및 개발 비용 등을 공제한 사설서버 운영 수익을 5대5로 나누어 갖기로 정하여, 위 'D서버'의 운영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2. 11. 1.경부터 2023. 10. 31.경까지 위 서버 트래픽 관리를 위하여 클라우드 서버에 가입하고 위 서버의 호스팅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클라우드 서버 및 디스코드 계정을 이용하여 위 서버의 운영을 관리하고, 피고인 명의의 L 및 M 계정을 이용하여 위 서버 패치 파일을 배포하고, 디스코드를 통하여 공지사항을 전파하고 서버 장애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후원금 수취 계좌로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피해회사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저작권권을 복제·전시하여 침해하였다.

3. O 'P서버' 운영의 점

피고인은 2024. 3. 2.경부터 2024. 5. 13.경까지¹⁾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피해회사로부터 게임물 제공 또는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게

1) 검사는 공소장에 '2023. 3. 2.경부터 2023. 5. 13.경까지'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증거목록 순번 제62번),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증거목록 순번 제75번)].



임 'O'의 사설서버인 'P서버'를 개설한 뒤 위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파일을 세팅하여 배포하고, 위 서버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후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고 위 서버에 가입된 해당 후원자의 계정에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는 등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피해회사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저작재산권을 복제·전시하여 침해하였다.

4. C 'R서버' 운영의 점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온라인게임 'C'의 사설서버인 'D서버'를 운영하던 중 2023. 10. 3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서버 운영행위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자 그 무렵 위 서버 운영을 그만두었고, 2023. 1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네 맘대로 D서버를 폐쇄하여 손해를 보게 되었으니, 사설서버를 신규 개설하여 책임지면, 수익금의 70%를 제공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신규 사설서버 운영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4. 1. 15.경부터 2024. 5. 16.경까지 위 서버 트래픽 관리를 위하여 클라우드 서버에 가입하고 위 서버의 호스팅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클라우드 서버 및 디스코드 계정을 이용하여 위 서버의 운영을 관리하고, 피고인 명의의 L 및 M 계정을 이용하여 위 서버 패치 파일을 배포하고, 디스코드를 통하여 공지사항을 전파하고 서버 장애처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피해회사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저작재산권을



복제·전시하여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주식회사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L 접속 아이피 가입자 정보확인 및 A 주민등록등·초본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컴퓨터 포렌식 자료 탐색, 선별 등)

1. U C 사설서버 운영자 관련자료, C D 서버 디스코드 채널, C D 서버 웹사이트, C D 서버 클라이언트

1. 각 영장 회신자료, 압수영장 집행 현장 사진 및 화면 채증자료

1. 메모장 기재내용, CCU Bot 화면 채증자료, 텔레그램 대화 내용(V, W, X, 단일웹제작)

1. 피의자 A에 대한 혐의입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9호(미승인 게임물 제공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 4항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 4항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주장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추징금 산정근거 :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수익금에 대한 거래내역 검토 및 수익금 최종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해회사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나, 피해회사가 위 공탁금 수령에 관하여 거절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과 및 벌금형으로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자하여 게임을 개발한 게임사의 수익을 악화시키는 등 게임콘텐츠의 개발과 육성을 방해하여 건전한 게임 문화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22. 6.경부터 2024. 5.경까지 이 사건 각 사설서버를 운영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였고, 그 범행의 내용 및 규모, 기간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피해회사와 합의되지 않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30

판사 김미경 _____